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8. 24 선고 2020가단218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

담당변호사 박영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인

변 론 종 결 2021. 6. 22.

판 결 선 고 2021. 8. 24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영주시 D 대 526㎡ 관하여 2018. 12. 3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9. 1. 2. 접수 제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6. 11. 10.부터 2017. 3. 28.까지 5차례에 걸쳐 E에게 34,000,000원을 빌려주었다. 원고는 2019. 2. 25. E과 C을 상대로 영주시법원 2019가소10224호로 소를 제기하여, E에게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, C에게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책임 또는 일상가사연대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. 위 법원은 2020. 5. 7. ‘C은 원고에게 26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7. 1.부터 2019. 2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고 한다).

나. C은 그 소유인 영주시 D 대 52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8. 12. 31. 피고와 채권최고액 35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2019. 1. 2.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9. 1. 2. 접수 제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쳤다.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29,982,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, F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6,000,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,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. 1. 30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았으므로,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

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다. 을 제1, 2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9. 1. 30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9카단10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, 2019. 2. 1.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,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원고는 위 가압류 신청서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

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

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C이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C에게 20,000,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J조합 예금계좌에서 2019. 1. 2. C의 예금계좌로 20,000,000원을 송금하고, C은 이를 받아 같은 날 I에게 20,000,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위와 같이 피고가 위 J조합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20,000,000원을 송금한 이틀 뒤인 2019. 1. 4. C으로부터 다시 6,000,000원을 송금받았고, 2019. 1. 15. I으로부터도 10,000,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수차례 C, I과 위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은 사실, 피고의 위 J조합 예금계좌에서 지속적으로 C의 신용카드대금, 대출이자, 서비스이용료 등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여기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, C이 원고와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(대구지방법검찰청 안동지청 2019년 형제3338호)의 수사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와 C은 2019년 1월경부터 사실혼관계 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정현